

실무 이사회 규정

실무이사회 규정

제정 2022.06.29. 제2차 이사회

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당진시체육회(이하 ‘본회’ 라 한다)가 실무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기능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실무이사회는 본회 이사 중에서 의장을 포함한 17인 내외로 구성하며, 회장이 선임한다.

② 의장은 회장이 되며, 회장 부재시 부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실무이사는 부회장, 운영팀장, 재정팀장, 경기팀장, 의전팀장, 대외협력팀장, 학생체육지원팀장, 총무팀장으로 한다.

④ 실무이사회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고,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한다.

제3조(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 또는 심의한다.

- ① 이사회가 위임한 각종 사항과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
- ② 본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심의
- ③ 각종 체육대회와 체육회 업무 추진에 중요사항으로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④ 기타 중요한 사항

제4조(회의소집) 실무이사회 회의소집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제5조(소집특례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 실무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당진시체육회 운영등에 관한 사항으로 긴급한 결정이 필요하나 이사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로서 실무이사 재적과반수 이상의 연명으로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2. 이사회 전 실무이사회에서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당진시체육회 또는 보조교부기관(당진시 체육담당부서)에서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
제6조(의사의결정족수) ① 실무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.

③ 실무이사회가 심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.

제7조(보고) 실무이사회 의결사항은 차기에 소집 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비납부) 당진시체육회(이하 “본회” 라 한다.)의 사업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비를 납부하여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9조(회비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사회비라 함은 본회 이사가 매 회계연도 마다 납부하는 출연금을 말한다.
2. 특별회비라 함은 본회 이사가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.

제10조(이사회비) ① 당연직 이사(회장 및 당연직 부회장 포함)를 제외한 제30조의 이사회 구성원은 아래의 연회비와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회 장 : 일천만원
2. 부 회 장 : 삼백만원
3. 이 사 : 일백만원

② 제1항의 연회비는 매년 3월말까지, 특별회비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제41조에 의한 기금 및 이사회비 납입금은 당해연도에 세입·세출 다음 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정해진 사업 외 필요한 사업에 관하여는 실무이사회 결정에 따라 사용 후,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체육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의 육성에 따른 지원 사업
2. 각급 국제·국내 체육대회에 출전, 입상하고 당진시의 위상을 제고시킨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격려 등 지원 사업
3. 이사 및 각급 단체의 부흥을 위한 지원 사업
4. 사무국운영비 및 복지 등 지원 사업

부 칙 <제정 2022.06.29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